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18일, 권성동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 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5.11.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 폐기)

제16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1.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권성동 의원)

최근 사회적으로 마약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경찰관의 마약 투약 의심 사건 등이 발생한 바,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 그 직무 및 신분 등 특수성에 비추어 채용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경찰관의 마약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음.

이에 매년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나아정 전문위원)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담당하고 있어 그 직무 및 신분 등 특수성에 비추어 타 직렬의 공무원과 비교해 고도의 윤리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며, 특히 마약류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렬의 공무원보다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경로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해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마약류 투약 여부 등에 대한 검사는 경찰공무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이라는 광범위한 목적 하에 구체적인 검사의 대상, 시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 서범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3건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